



“뇌경색은 유전질환, 업무상 재해 아니다”

제주지법 행정부(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)는 A씨(54)가 “자신의 질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”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.

재판부는 판결문에서 “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‘업무상 재해’는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,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”고 설명했다.

재판부는 이어 “원고가 2009년 3월부터 현장감독관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, 민원 발생으로 공사의 준공 및 착공이 3개월 정도 늦어진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

해 발병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”고 강조했다.

재판부는 특히 “원고의 업무 숙달 정도와 업무 강도, 원고의 고혈압 증세가 오랜기간 개선되지 않고 지속됐던 점, 원고의 모친이 뇌경색 및 상세불명의 치매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, 원고가 유전성 뇌졸중인 ‘CADASIL’ 환자로 판명된 점 등에 비춰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유전질환으로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”고 판시했다.

A씨는 1989년 B개발에 입사해 토목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년 3월부터 공사현장 감독관 업무를 수행하다 같은해 11월 뇌경색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거부했다. 이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. ●